

대연 디아이엘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 예정자, 예비자)로 선정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미청약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www.applyhome.co.kr)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신청자격' 및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상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지자체 협의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29.(목) 예정)**에 대연 디아이엘 홈페이지 (**추후 안내예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하지 않습니다.

I 공급개요 및 일정

1) 공급규모

- 가.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619번지 일대
나.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6층 ~ 지상36층 28개동 총 2,382세대 중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236세대
다. 주 택 형 : 59㎡A, 59㎡B, 84㎡A, 84㎡B, 99㎡A, 99㎡B
라. 입주예정시기 : 2027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2) 기관별 공급세대수 배분(안)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59A	59B	84A	84B	합계	
일반공급 세대수			592	233	1,056	498	2,379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 괄호안의 숫자는 예비입주자 세대수	장애인	부산광역시	10(50)	5(25)	18(90)	7(35)	40(200)
		울산광역시	5(25)	2(10)	7(35)	4(20)	18(90)
		경상남도	4(20)	1(5)	5(25)	2(10)	12(60)
		소계	19(95)	8(40)	30(150)	13(65)	70(350)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13(65)	6(30)	21(105)	12(60)	52(260)
		국가유공자	10(50)	4(20)	20(100)	9(45)	43(215)
		장기복무 제대군인	8(40)	2(10)	15(75)	7(35)	32(160)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9(45)	3(15)	19(95)	8(40)	39(195)
		소계	59(295)	23(115)	105(525)	49(245)	236(1180)

- ①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 공급내역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통지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② 주택형 059.9530A 청약 신청시 동·호수 배정은 59A1, 59A2타입에 해당되는 동·호수 중에서 임의배정 되오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단지 및 동호배치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③ 주택형 059.7650B 청약 신청시 동·호수 배정은 59B1, 59B2타입에 해당되는 동·호수 중에서 임의배정 되오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단지 및 동호배치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④ 주택형 084.9812A 청약 신청시 동·호수 배정은 84A1, 84A2타입에 해당되는 동·호수 중에서 임의배정 되오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단지 및 동호배치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⑤ 주택형 084.8319B 청약 신청시 동·호수 배정은 84B1, 84B2타입에 해당되는 동·호수 중에서 임의배정 되오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단지 및 동호배치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일정 안내(예정)

구분	일정(예정)		비고
입주자 모집공고	2023.06.29.(목)		※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홈페이지(추후 안내예정)
견본주택 개관	2023.06.30.(금)		※ 홈페이지(추후 안내예정)
대상자 회신	2023.07.05.(수) 14:00까지		※ 당사 담당자에게 명단 송부
특별공급 접수일자	인터넷 청약	2023.07.10.(월)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당첨자 및 등.호수 및 예비입주자 발표	2023.07.18.(화)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개별조회
계약 체결	2023.08.02.(수) ~ 2023.08.08.(화) 10:00~16:30		※ 장소 : 견본주택(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6-11) ※ 당사 홈페이지(추후안내예정) 게시 및 개별 문자안내

※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여부를 확인 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을 위해 반드시 신청일 전 은행 등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①공동인증서,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인허가 및 업무 추진 중에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신청 전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 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특별공급 유의사항

1) 특별공급 자격요건

구분	내용
1회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특별공급에 한해서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p>※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 중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납입인정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p>-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납입인정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p>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ext-align: center;">구분</th><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ext-align: center;">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ext-align: center;">울산광역시</th><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ext-align: center;">경상남도</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85㎡ 이하</td><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td style="text-align: center;">250만원</td><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102㎡ 이하</td><td style="text-align: center;">600만원</td><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135㎡ 이하</td><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td style="text-align: center;">700만원</td><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모든면적</td><td style="text-align: center;">1,500만원</td><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td></tr> </tbody> </table>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등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2)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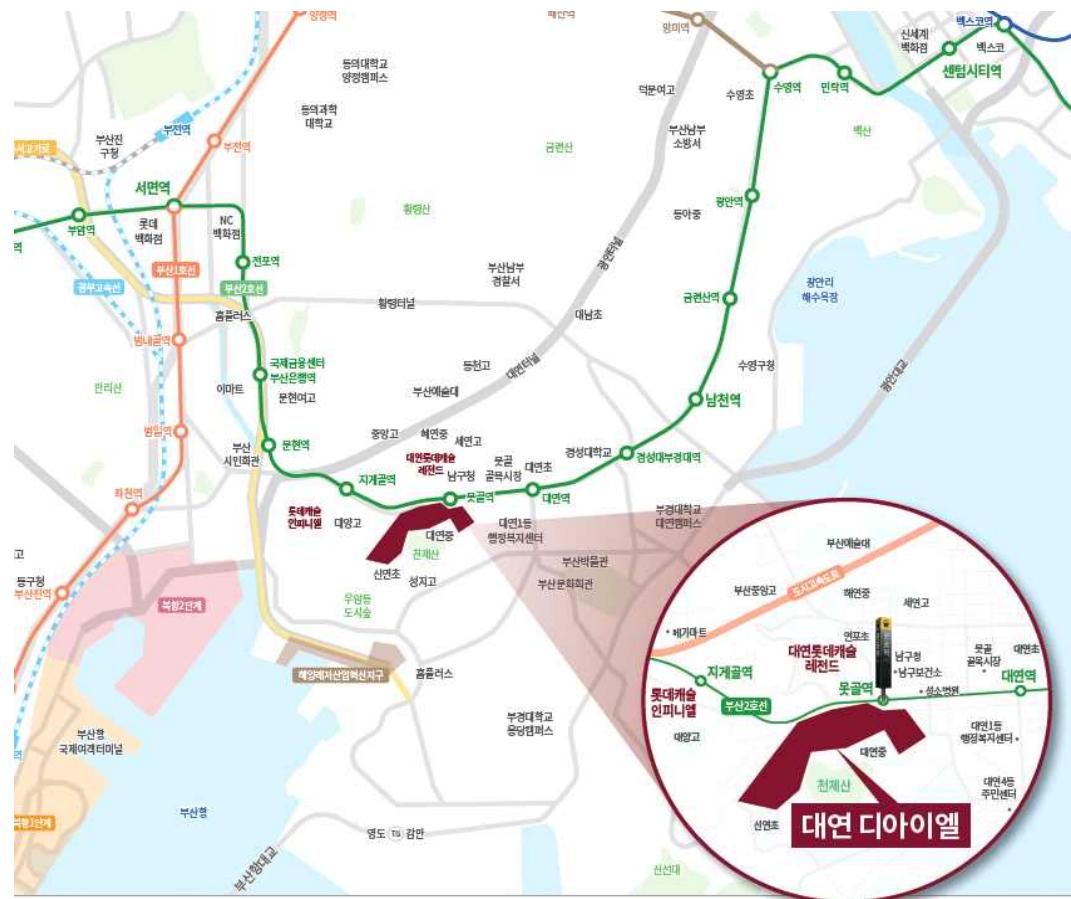
-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분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제외 및 계약불가]
 - 대상 기준 및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은 기관추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됩니다.
- ※ 해당 기관 추천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의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 후 당첨 시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혼란 방지를 위하여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업무와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으로 실시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및 제26조에 의거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미계약 등으로 배정 물량이 남을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하며,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유형별 구분 없이 **타입별 배정물량의 500% 범위**에서 선정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 사업주체는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계약취소, 통장 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에 있어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 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본인 및 동일세대원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신청한 경우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타입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 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당첨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3.06.29.(목) 예정)** 공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 등은 '대연 디아이엘' 견본주택 및 안내 서류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안내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6.29.(목)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지 위치



※ 상기 위치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개발계획 및 인허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분양가 : 미정

- 현재 분양가 산정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 (2023.06.29.(목) 예정)시 최종확정

3)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대연 디아이엘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배정내역(추천양식) - 양식

※ 각 주택형별 배정 세대수에 맞게 추천인 명단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예비추천인 명단도 동시에 추천 바랍니다.

(예비추천인 명단 배정시)

※ 예비추천 여부는 기관이 정하고 예비자 추천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음.

※ 기간 내 미 투봉시 틀별공금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리 흘 예정이오니 틀별회 응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 내 미 승모자 혹은 승모자 없는 것
※ 사기 범호는 추천 수의가 아니을 알려드립니다.